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05 호 2023. 6. 8.(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07회[하천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08회[하천점용 허가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8회[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변경]공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96회[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공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803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10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박연수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2길 4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6-33번지	하천의 명칭	양정천
점용 내용	경작	점용 면적	191㎡
점용 기간	2023. 6. 5.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10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진미경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1길20 삼환나우빌 101동 1201호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744번지	하천의 명칭	상안천
점용 내용	경작	점용 면적	41m ²
점용 기간	2023. 6. 5.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 - 18호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변경징수 공고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 4조(약가)의 규정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 제정이유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238(2023.2.21.)호, 253(2023.2.23.)호와 관련하여, 기존 대비 2023년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예방접종 수수료

접종명	용량 (vial)	백신단가		변경전 징수액	징수 결정액	비고
		기존	변경 (조달수수료 별도)			
B형간염 (만 10세 이하)	0.5ml	2,880원	3,310원	2,900원	3,400원	1백원미만 절상
B형간염 (만 11세 이상)	1ml	5,040원	5,790원	5,100원	5,800원	
B형간염 (투석환자)	2ml (1ml*2)	10,080원	11,580원	10,200원	11,600원	

3. 변경징수일: 2023. 6. 7.(수)부터 시행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796호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 2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요청기관	제공일자	법적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울산광역시 복구청[건축주택과]	'23. 5. 4.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및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86조 - 「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제96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 관련 재산조회	조회대상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및 토지소유현황
울산광역시 복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	'23. 5. 9.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2022하단5380 파산선고」 관련 사실조회	
울산지방법원 [민사과 (제16민사단독)]	'23. 5. 9.	- 「민사소송법」 제294조	「2023가단110977 공유물분할」 관련 사실조회	
울산지방법원 [민사과 (제15민사단독)]	'23. 5. 9.	- 「민사소송법」 제294조	「2023가단110960 공유물분할」 관련 사실조회	

<p>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p>	<p>'23. 5. 23.</p>	<p>- 「민사소송법」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p>	<p>「2023개 회6882 개인회생」 관련 사실조회</p>	<p>조회대상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및 토지소유현황</p>
<p>울산광역시 북구청[세무2과 (울산지방법원)]</p>	<p>'23. 5. 26.</p>	<p>- 「민사소송법」 제29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p>	<p>「2023가합10906 매매대금」 관련 사실조회</p>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803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2023.3.28.)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안 별표)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나. 「의료법」 제27조, 제33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6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전화 : 052)241-8302, 팩스 : 052)241-810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6. 기타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8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300	3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신 설>	<신 설>	<신 설>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29조, 제34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u>과기하지 아니한 자</u>	법 제34조제항	600	1,200	3,000
2.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 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 제2호	300	300	300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 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 ⑤ (생략)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 ⑩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